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3.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2. 3. 18

다. 상정일자 : 2002. 3. 18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허길중

나. 개정사유

○ 전남도로부터 감면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제1조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중 "지역사회의 진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진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로 일부를 보완하였으며,

○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 제11조제1항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농산물가공육성법 제5조로 법률이 변경되었으며,

○ 제14조의2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에 의해 신고를 하고 2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활) 등 면세 조항을 신설하였고,

○ 제23조제1항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자구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화 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 및 전라남도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게됨.
- 안 세14조의 2와 제14조의 3은 신설규정으로서 전라남도준칙안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서 본군 특히 읍지역에의 주차장 난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그 감면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 노외주 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할 경도인가는 보다 깊이있게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임.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사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화순군세의”를 “따라 화순군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긴밀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차전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저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주차선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

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등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세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기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범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23조제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안) |
|---------|---|
| | <p>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 할)를 면제한다.</p> <p>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및사업소세(재산 할)를 주정한다</p> |
| 〈 신 설 〉 | <p>제14조의3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p> <p>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

